

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시행(2024. 2)

□ 추진배경

- 장애인의 신체적·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구강관리 능력 부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조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건강상태 열악하여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(2019. 5.)에 국가 차원의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 단계적 도입 포함됨에 따라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 기여하고자 함.

□ 사업개요

- (개요)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구강관리를 통해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치과 예방진료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불소도포, 치석제거, 구강보건 교육 등 서비스를 통해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·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
- (근거)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장애인 건강주치의), 시행령 제5조~제8조, 시행규칙 제7조
- (사업기간) 2020년 6월부터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었고, 2024년 2월부터 제4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함.
- (사업지역) 기존 지역(부산광역시, 대구 남구, 제주 제주시)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임.
- (적용대상)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(대상자 확대)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‘장애인’으로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여 치과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애인
※ 약물 진정, 행동 조절이 필요 없이 물리적 숙박만으로 진료 협조가 가능한 자
- (본인부담률) 10% 적용(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)
※ 진찰료 등 기존 행위수가는 통상 본인부담(30%, 성인 의원급 외래기

준)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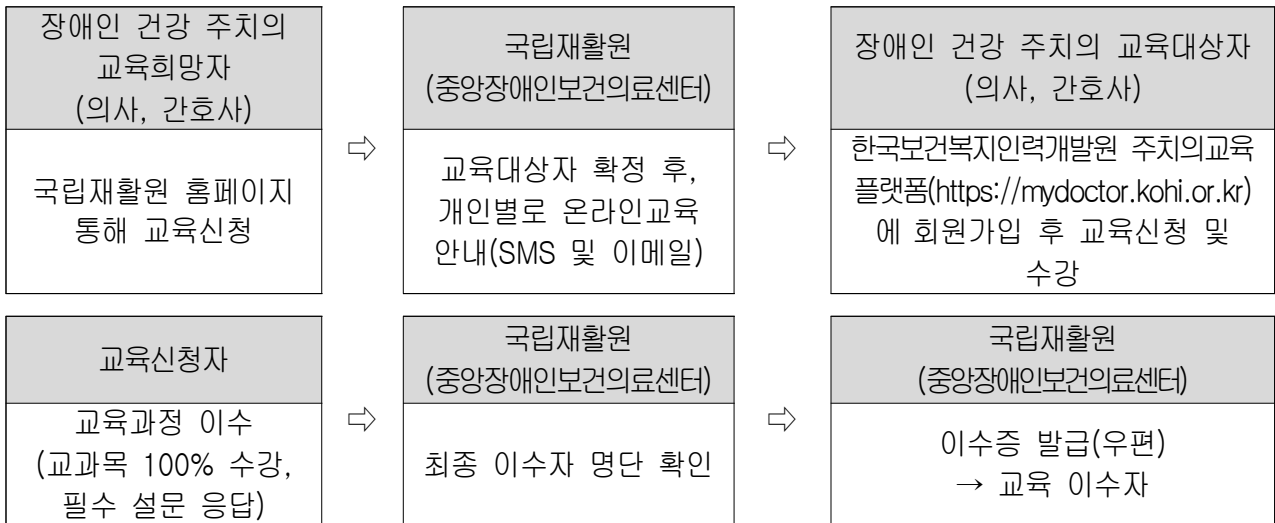
○ (주치의) 다음의 기관에 속한 경우 주치의로 선택

-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중 장애인 치과 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치과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사

※ 「의료법」 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 치과의원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(요양병원, 한방병원, 상급종합병원,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제외)

※ 치과주치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도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임.

< 교육신청 및 이수증 발급 흐름도 >



<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 프로그램(온라인)> 각 차시당 30분 내외

구분	교육 내용	교육대상
치과주치의 교육 (구강건강 관리)	1차시	치과의사
	2차시	
	3차시	
	4차시	
	5차시	
(신규)(안) 치위생사 교육	1차시	치위생사
	2차시	
	3차시	
	4차시	

※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2점 인정(단, 보수교육점수는 매년 인정하지 않고, 최초 1회 한정하여 인정함.)

□ 서비스 내용

<장애인 치과주치의 서비스 모형>

구분	구강관리
대상자	모든 장애 유형별 중증 장애인
관리범위	포괄적 구강건강관리
대상기관	치과의원, 병원급 의료기관
주치의	치과의사
서비스	포괄평가 및 계획수립
	구강건강관리(불소도포, 구강보건교육, 치석제거)

- 1) (포괄평가 및 계획수립) 치과 주치의가 중증 장애인의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, 중증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제공
- 2) (구강건강관리) 중증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불소도포, 구강보건교육, 치석제거를 일괄 제공
 - 단, 장애인의 비협조 등의 사유로 치석제거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불소도포, 구강보건교육만 제공할 수 있음.

□ 이용신청 및 절차

① 주치의 등록	국립재활원, 보건복지부, 건보공단, 심평원 온라인 주치의 교육 이수 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등록
② 주치의 정보 확인	건보공단 홈페이지(건강iN, http://hi.nhis.or.kr)/병의원 정보/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찾기
③ 주치의(의료기관) 방문상담 및 이용 신청	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사실 통지서 작성
④ 주치의 이용신청 사실을 공단에 통지	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사실 통지서 건보공단(지사)에 제출(팩스, 내방, 우편)
⑤ 서비스 제공	

□ **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**

목 록		횟수	3단계 (현행)		4단계 (개선(안))-미확정	
			점수	금액(원)	점수	금액(원)
(치과의원)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		연1회	354.70	32,990	좌동	
(치과의원) 구강건강관리료 (불소도포+구강 보건교육+치석제 거)	그 외 장애유형	연2회	898.98	83,610	<u>958.60</u>	<u>92,030</u>
	뇌병변, 지적·정신·지 체·자폐성 가산		1,276.99	118,760	<u>1,336.61</u>	<u>128,310</u>
(치과의원) 구강건강관리료II (불소도포+구강보건교육)		연2회	464.31	43,180	<u>523.98</u>	<u>50,300</u>

※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가 개선될 예정임.

□ **대면 및 온라인 교육 안내**

- 장애인 치과주치의 온라인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플랫폼에서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될 예정(매년)이며, 아래와 같이 대면 교육도 진행할 예정임.

-장애인 치과주치의 대면 교육-

- ▶ 일시 : 2024년 2월 4일(일) 13:00 ~ 17:00
- ▶ 장소 : 대한치과의사협회 강당

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위원회